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1995. 11. 23

제안자 : 홍이식 의원 외 4인

## 주 문

9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승인안,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9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할 것을 결의한다.

1. 운영기간 : '95. 11. 27 ~ 12. 26 ( 30일간 )
2. 구 성 :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심사안건 : . 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  
.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9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제 안 이 유

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안,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처리함에 있어 당해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배분에 의한 짜임새 있고 균형잡힌 예산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실장 등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하여 의문점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듣고 군정계획 및 우리군의 장기 발전 계획과 연계여부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회의진행의 능률을 도모하고 안전 처리에 있어 내실을 기하고자 함.